

Ⅱ - 47	제 목	합병 후 존속법인의 실적승계 여부(비공사업체)		
회신일자	2003년 12월 26일	회신방법	산자부 전력57300-929	
의 요 지				
질의)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전기공사업자인 법인을 흡수하였을 경우 전기공사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				
회 신 내 용				
답변) ○ 현재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서는 공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○ 현재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○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, 피합병회사의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며, 피합병회사의 공사실적이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, 전기공사업법에서 특별히 상법 제2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,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○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존립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피합병회사의 전기공사실적이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.				